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2010073(본소), 2024나2010080(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2010073(본소), 2024나2010080(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1가합7760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곽환희, 최재훈

변론 종결 2024. 10. 2.

판결 선고 2024. 11. 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1가합77602(본소),
2022가합74518(반소) 판결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6,932,6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1. 23.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2,102,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2행의 "지급하였다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로 고친다.

○ 4면 14행의 "(다만"부터 16행의 "변경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서(갑 제30호증)에 의하면, J는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된 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가합60881(본소), 60898(반소),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이행 경위 등에 관하여, "D는 '이 사건 공사를 4억 원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4,0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녹취서 3면). D는 J에게 '건축주가 얼마 자기 돈 집어 넣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면서 피고에게 2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다. D가 '2억 2,000만 원이지?'라고 물어 J가 '2억 원입니다'라고 정정해 준 적이 있다(녹취서 15~1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인 6억 6,000만 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약정된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5면 1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한편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C이 ① 2021. 6. 10.자 180,001,000원(대표이사 가지급금), ② 2021. 7. 22.자 21,274,500원(K 용역비), ③ 2021. 7. 22.자 48,350,500원(이준흠 용역비), ④ 2021. 7. 22.자 48,350,500원(L 용역비)을 피고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위 2021. 6. 10.자 180,001,000원의 경우 C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2억 원과 유사한 액수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실제 지급액은 2억 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달리 2억 원이 넘는 합계 317,975,500원(= ① 200,000,000원 + ② 21,274,500원 + ③ 48,350,500원 + ④ 48,350,500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억 원을 반환받았으나, 위 ①의 돈은 반환받은 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M조합 연성지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1. 6.

10. 위 ①의 돈 중 180,000,000원(송금수수료 1,000원 제외)이 C의 대표이사인 N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21. 6.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는데, 그 송금 내역에 수취인이 O, P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O, P회사와 피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돈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원고는 O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인천 서구 Q모텔'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의 부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억 원을 넘는 돈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6면 8행의 "것이나" 다음에 "(예를 들어 견적서에는 60호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객실 수는 40호실에 불과하여 40호실에 대한 공사만 시공되었으므로, 나머지 20호실에 대한 공사가 미시공된 것으로 보아 미시공된 부분의 금액을 산정하였다)"를 추가한다.

○ 6면 17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 4억 4천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500,358,000원[= 700,358,000원(= 원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공사대금 655,000,000원 + 원고가 C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공사대금 45,358,000원1)) - 피고가 수령한 2억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60,358,000원(= 500,358,000원 - 4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원고 또는 C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을 명확하게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다만, 앞서 본 J의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660,000,000원 중 약 2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도 2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기초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가 필요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약정 공사대금을 460,000,000원(= 660,000,000원 - 200,000,000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데에 그치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위 655,000,000원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곧바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위 45,358,000원은 이와 별도로 C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455,000,000원(= 대출금으로 지급된 655,000,000원 - 피고가 반환받은

200,000,000원)이고, 이는 위 46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즉 피고의 위 주장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500,358,000원을 받음으로써 460,0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455,000,000원을, C이 45,358,000원을 각 부담한 결과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경표

판사이경훈

판사김제욱

1) 원고는 2022.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45,358,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C이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22. 11. 9.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사실을 다툴 없는 사실로 원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사실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3. 11. 23.자 준비서면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45,358,000원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위 사실에 관하여 주장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위 45,358,000원에 관하여 'C이 하수급업체에 대신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4. 5. 17.자 준비서면 6면).